



제 424회 국회 (임 시 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60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등 명확화	3
2. 나무병원 행정처분 전 계약한 사업의 계속 수행	7
3. 수목치료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13
4.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등	18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2. 11.

다. 회 부 일 : 2025. 2. 1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기 위하여 나무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고, 법 집행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수목진료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8).
- 나.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목진료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0).
- 다. 나무병원에 종사중인 수목치료기술자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제1항).
- 라.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17 신설).

IV. 검토의견

1.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등 명확화

개정안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8).

현행	개정안
제21조의8(<u>부정행위자</u> 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u>부정행위</u> 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1조의8(<u>부정행위자 등에</u> 대한 조치) ① ----- ----- ----- <u>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u> ----- ----- -----.
<신설>	② 산림청장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신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행	개정안
	<u>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현행법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제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처분대상이 되는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법 집행현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¹⁾

특히, 최근에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인원이 증가하면서 부정행위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준수사항위반 현황(2024.12월 기준)】

(단위: 건)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정행위	3	1	-	1	-	1	-
준수사항위반	26	1	-	14	9	-	2

자료: 산림청

1) 산림청에 따르면, 시험운영기관(한국임업진흥원)이 자격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사항이 작성된 안내문을 응시자들에게 배부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안내문에 근거하여 부정행위자를 처리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설명임.

2) 【 나무의사 자격시험 실시 현황 】

이에 개정안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도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임.³⁾

회 차	유 형	일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제1회	필 기	'19. 4.	816	82	10.1
	실 기	'19. 7.	81	52	64.2
제2회	필 기	'19. 10.	1,147	1	0.1
		'19. 12.	913	229	25.1
	실 기	'20. 2.	255	119	46.7
제3회	필 기	'20. 7.	1,088	84	7.7
	실 기	'20. 10.	211	118	55.9
제4회	필 기	'21. 2.	1,121	41	3.6
	실 기	'21. 4.	134	57	42.5
제5회	필 기	'21. 7.	1,322	476	36.0
	실 기	'21. 10.	521	193	37.0
제6회	필 기	'21. 12.	1,288	136	10.6
	실 기	'22. 3.	440	203	46.1
제7회	필 기	'22. 6.	1,524	248	16.3
	실 기	'22. 8.	459	164	35.7
제8회	필 기	'22. 10.	1,781	266	14.9
	실 기	'23. 2.	543	248	45.7
제9회	필 기	'23. 7.	2,237	585	26.2
	실 기	'23. 10.	758	229	30.2
제10회	필 기	'24. 2.	1,956	395	20.2
	실 기	'24. 7.	855	174	20.4

*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로부터 2년동안 1차 시험 면제
자료 : 산림청

- 3) 산림청은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측면에서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u>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u>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u>
경찰공무원법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u>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u>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2. 나무병원 행정처분 전 계약한 사업의 계속 수행

개정안은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목진료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10).

현행	개정안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하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지체 없이 해당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⑤ <u>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u>
<u><신 설></u>	⑥ <u>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이 제5항에 따라 수목진료 사업을</u>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계속하는 경우 해당 수목진료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무병원으로 본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사업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1호·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⑨ 제8항----- ----- ----- -----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한다. ⑦ (생략)	-----.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2024년 기준 나무병원 등록소는 총 872개소⁴⁾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현재까지 총 268개소로, 14개소(5.2%)는 등록취소처분을, 254개소(94.8%)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최근 6년간 나무병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등록기준 미비	변경등록 미이행	영업정지기간 수목진료 행위
영업정지	계	254	204	50	-
	2024	29	15	14	-
	2023	27	18	9	-
	2022	17	5	12	-
	2021	169	165	4	-
	2020	6		6	-
	2019	6	1	5	-
등록취소	계	14	13	-	1
	2024	-	-	-	-
	2023	-	-	-	-
	2022	13 ⁵⁾	13	-	-
	2021	-	-	-	-

4) 【나무병원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나무병원	896	1,439	1,296	1,356	1,426	771	872

주) 2023년 나무병원 평균 매출 규모 : 약 1억 2,400만원(2024년 453개 업체 조사결과)

자료 : 산림청

	2020	1	-	-	1
	2019	-	-	-	-

자료 : 산림청

이처럼 나무병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실적이 높은 상황에서 등록취소 등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의 수목진료⁶⁾ 중단 시 나무병원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정안은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무병원으로 하여금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도급계약이 체결된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되, 등록취소 등 처분 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진료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발주자의 계약상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1조의10제7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나무병원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외적으로 사업 수행

5) 2022년도 등록취소처분이 급증한 사유는 2020년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변경(시행령 및 별표 1의6)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갖추지 못한 나무병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졌고, 1·2차 처분 이후에도 기준을 갖추지 못한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이 된 것으로 파악됨.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1차위반 6개월 영업정지 → 2차위반 12개월 영업정지 → 3차위반 등록취소

6) 제2조(정의)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을 허용하려는 것이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안 제21조의10제7항제2호는 이러한 제외사유로서 제21조의10제1항제1호·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6호(폐업한 경우)가 아닌 제4호(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를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⁷⁾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⁸⁾ 및 「해상교통안전법」⁹⁾ 등은 등록취

7)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8)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소 사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처분 전에 계약한 사업의 계속 수행을 제한하고 있음.

둘째, 안 제21조의10제4항의 내용은 안 제21조의10제5항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제5항의 후단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안 제21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신설됨에 따라 제10항(중전의 제7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은 제8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9)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
12.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본다.
-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실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목치료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개정안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수목치료기술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¹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13제1항, 제57조제3항1호의5).

현행	개정안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u>나무의사</u> 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13(보수교육) ① ----- ----- <u>나무의사와 수목</u> <u>치료기술자</u> -----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1의4. (생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	1의5. -----

10) 2025년 6월 4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13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에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바,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국회에산정책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현행	개정안
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u>나무의사</u>	----- <u>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자격기본법」 제35조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관리자로 하여금 그 취득자의 직무능력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¹⁾ 현행법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에 대하여 그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1) 「자격기본법」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내용·방법·절차·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업윤리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현행법 제21조의13제2항13)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나무의사협회에서 실시되고 있고, 교육대상자는 3년간 20시간 이상 희망하는 교과목을 교육 일정에 맞춰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을 받게 됨.

【2025년 나무의사 보수교육 계획】

교육과목	시간	종류	교육과목	시간	종류
농약학	4	이론	설계서와 품셈	3	이론
수목학	3	이론	나무병원 진단서·처방전작성	5	이론
녹병의 이해	2	이론	나무병원 운영	2	이론
수목 보호제 분류와 처방	3	이론	나무의사의 윤리와 역할	2	이론 (필수)
흡습성 해충 진딧물의 이해	3	이론	산림보호법 및 정책의 이해	2	이론 (필수)
보호수 이식과 관리의 실제 사례	2	이론	수목의 동정과 이해	4	실습
생활권 수목 해충 동정	2	이론	수목 병해 동정	4	실습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수목의 생리적 변화	3	이론	수목 해충 동정의 실제	4	실습
생활권 수목 병해와 비생물적 피해 구분	2	이론	현미경 검경 실습	4	실습
소나무재선충의 이해	3	이론	진단장비 실습	4	실습
			소나무 관리, 진단, 가지치기	8	실습

자료 : 산림청

한편,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의 기준으로 등록되는데,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수목의 예방·치료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¹⁴⁾

13)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재(2024년 기준) 총 872개소의 나무병원에서 나무의사 885명과 수목치료기술자 870명이 종사하고 있음.

【 나무병원 종사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현황 】

구분	나무병원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현황	872개소	885명	870명

자료 : 산림청

최근 3년간 나무의사 자격취득자는 2022년 367명, 2023년 47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 17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취득자는 2022년 849명 → 2023년 951명 → 2024년 98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취득 현황 】

(단위 : 명)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7,402	1,083	1,079	1,436	1,216	1,428	1,160
나무의사	1,557	52	237	250	367	477	174
수목치료기술자	5,845	1,031	842	1,186	849	951	986

자료 : 산림청

이처럼 나무병원에서 나무의사와 함께 수목치료기술자도 수목의 예방·치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을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로만 규정하고 있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수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목치료기술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지식과 역량이 저하될 수 있고, 효과적인 수목진료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수목치료기술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지식·역량과 윤리의식을 유지·강화하도록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양질의 수목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도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4.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등

개정안은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17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¹⁵⁾ <u>제21조의17(수목진료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목진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수목진료 기술 개발 및 연구 2. 수목진료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시험 연구 4. 그 밖에 수목진료 활성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u>

현행	개정안
	<u>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 <u>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⑤ 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산림청은 2012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림병해충의 연구 및 수목진료 컨설팅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 나무병원 13개소와 수목진단센터 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¹⁵⁾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2018년도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수목치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의 업무영역임을 고려할 때, 기존 국·공립 나무병원 13개소와 수목진단센터 9개소에도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진료지원센터에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배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목진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지역 거점의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운영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21조의17제3항제2호는 지원센터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15) 개정안은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로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을 개정하여 제21조의17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임.

16) 국·공립 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지정 현황(참고 1 참조)

못한 경우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지정의 근거규정인 제1항에서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바, 제1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지정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안 제21조의17제5항도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제1항 각 호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청문 규정을 보칙 장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제48조의3)하고 있으므로, 안 제21조의17제4항의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는 현행법 제48조의3(청문) 각 호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¹⁷⁾

셋째, 현행법 제21조의14는 나무병원 등 기관·단체에 대한 감독관청의 행정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목진료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행정조사 대상에 수목진료지원센터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¹⁸⁾

문 의 처
02)6788-5423

17)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18) 제21조의14(보고·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2.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
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참 고 자 료

참 고 1

국·공립 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지정 현황

□ 국·공립 나무병원(13개)

명 칭	소 재 지
국립나무병원	국립산림과학원(서울 동대문구 회기로57)
부산시 공립나무병원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부산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6)
대구시 공립나무병원	대구광역시 수목원관리사업소(대구 달서구 화암로342)
대전시 공립나무병원	한밭수목원(대전 서구 둔산대로169)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오산사무실(경기 오산시 청학로211)
강원도 공립나무병원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강원 춘천시 화목원길24)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51)
충청남도 공립나무병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세종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전라북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북 진안군 덕현로45-54)
전라남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7)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경북 경주시 통일로367)
경상남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386)
제주도 공립나무병원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한라산연구부(제주시 수목원길 72)

□ 수목진단센터(9개)

명 칭	소 재 지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서울 관악구 관악로1)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대전 유성구 대학로99)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병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7)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전남 순천시 중앙로255)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경북 상주시 경상대로2559)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경남 진주시 진주대로501)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자료 : 산림청